

장학생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서

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(이하 “대구대학교”라 함)과 (주)민커뮤니케이션(이하 “민커뮤니케이션”이라 함)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“대구대학교”와 “민커뮤니케이션”간의 [호혜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잠재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]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

본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류 협력하고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
- “대구대학교”는 멀티미디어공학 전공에 재학중인 **민커뮤니케이션**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“민커뮤니케이션”에 장학생으로 추천함으로써 잠재적 우수 인력 확보에 협조를 한다.
- “민커뮤니케이션”은 “대구대학교”에서 선발한 우수 인력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및 협조 한다.

제3조 (조문해석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 (비밀유지)

- 본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(이하 “정보제공당사자”)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을 “정보제공 당사자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해제, 해지, 만료 기타 사유로 본 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1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제5조 (유효기간)

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본 협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각 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간 자동 연장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

1.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2. 본 협약의 시행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“대구대학교”와 “민커뮤니케이션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3. 본 협약서에 따른 협력과정상 각 당사자가 담당한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.
4.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서의 지위,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,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.
5. 각 당사자는 협약서의 유효기간 중에도 본 양해각서의 민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,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가진다.

2012년 5월 25일

대구대학교

정보통신대학

학 장 우 홍 체

9
6/6/2012

주식회사

민커뮤니케이션

대표이사 김 명 민

Y